

장학금 지급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하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사학위과정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교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지급대상) 본 대학교 재학생 또는 신입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학시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학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재학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4.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5. 국가 또는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의2 (경제사정 곤란 학생 장학금 지급기준) 신입학장학금 및 성적장학금, 특장장학금 지급대상 학생 중 수혜학기 기준 소득구간 9구간까지 해당할 경우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으로 보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장학금의 종류

제4조 (신입학 장학금)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1. 정석장학금 : 입학전형 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 신입생 성적장학금 : 대학 또는 모집단위별로 입학전형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 체육특기생장학금 : 체육특기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4. 농·어촌자녀 특별전형 장학금 : 농·어촌자녀 특별전형으로 2015학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시에는 수업료의 3분의 1 상당액을, 재학중에는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0이상이면 수업료의 3분의 2 상당액을,

3.50이상이면 수업료의 3분의 1 상당액을 지급한다.

5. 고른기회장학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의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입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입학시에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재학 중에는 제6조제13호 가계곤란장학금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선발기준은 매학년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조 (성적장학금) 재학중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다음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1. 성적우수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인 학생중 매학기 일정수를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금액은 수업료 전액과 수업료의 3분의 2, 수업료의 3분의 1로 구분하며, 매학기 각 대학이 배정인원 내에서 성적과 학과(부) 재학생수를 고려하여 선발한다.

2. 한진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중 학과별 최우수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배정 학과 및 인원내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 (특정장학금) 국가와 학교발전에 공헌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장학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지급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따른다.

2. 근로장학금 : 재학생중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내 특정부서에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근로하게 한 후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공로장학금 :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학생(교내외 활동에 공헌이 크거나 학예술대회에서 명예를 높인 자)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모범학생장학금 : 품행이 방정하고 각종 선행과 효행을 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고시장학금 :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가. 지급대상은 행정고등고시(기술직 포함),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시험으로 한다.

나. 가호의 시험에 1차 합격한 자는 합격 후 1회에 한하여 2개 학기 간, 최종합격자는 합격 후 잔여 수업연한까지 수업료 전액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6. 글로벌장학금 :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교의 입학허가자 및 재학생에게는 입학 및 재학 시 「글로벌장학금지급시행세칙」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해외교류장학금 : 본교에 2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으로서 재학 중 성적이 특별히 우수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며 해외대학 수학에 지장이 없는 학생에게는 「국제교류학생규정」에 따라 해외대학 수학의 기회와 수학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8. 봉사장학금 : 총학생회 및 기타 학생자치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중에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0이상이며, 학교발전 및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9. 교직원자녀장학금 :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재단 임직원 포함)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0. 장애학생장학금 : 본인이 장애인(국가로부터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은 자)으로서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2.00 이상인 학생에게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1. 형제자매장학금 : 본교에 재적중인 학부생의 형제자매 및 직계가족이 입학할 경우, 일정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2. 학자금대출이자면제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에게는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8회까지 대출신청학기 대출금(수업료 범위내 금액)의 6~12개월분 이자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건축학과는 10회까지, 의학과는 의예과를 포함하여 12회까지 지급할 수 있다.
13. 가계곤란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의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14.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금의 반액을 지급한다.
15.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 : 본교에 재학 중 공인외국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6. 인하사랑장학금
 - 가.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00 이상인 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수업료의 일정액을 지급하되, 인원과 금액은 총장이 정한다.
 - 나.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면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단과대학)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사정관제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선발인원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7. 학비보조장학금
 - 가.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 3.00 이상이며 가계가 빈곤한 학생에게 주는 일

정액의 장학금으로 수혜기간은 7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학기 등록 인원내 따른 배정인원 내에서 한국장학재단이 통보한 소득구간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학생지원처 장학복지팀에서 선발한다. 다만, 건축학과는 9개 학기 이내로, 의학과는 의예과를 포함하여 11개 학기 이내로 한다.

18. 특별장학금 : 별도의 장학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9. 해외인턴장학금 : 인재개발팀에서 시행하는 해외인턴십에 선발된 학생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 인하프로그램장학금 : 학업역량, 사회봉사역량, 국제화역량, 기타역량 분야에서 성과가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1. 기금장학금 :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으로 지급 조건은 출연자의 의사에 따른다.

제7조 (기타장학금) 장학금 지급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교외장학금) ① 해당대학, 학과(부) 및 인원을 지정하거나 또는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연자의 조건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제외한 경우에는 교외장학생 수의 학과(부)별 비율을 참작하여 학생지원처장이 대상학과(부)를 선정한다.

③ 정부의 가계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장학금 유형 I, 유형Ⅱ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

제9조 (유효기간) 장학금 신청 및 수혜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 사유가 발생한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복학생 : 성적우수장학금, 한진장학금
2. 재입학생
3. 징계해제자
4. 근로성적 불량 학생 : 근로장학금
5. 「학칙시행세칙」 제38조에 의한 등록금 대체자 : 성적우수장학금, 한진장학금, 학비보조장학금, 인하사랑장학금, 가계곤란장학금, 고시장학금
6. 「학칙」 및 관련규정 위반자

제11조 (이중수혜금지) ① 장학금의 혜택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며, 장학금 수혜 총액은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중수혜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택하여 수혜받을 수 있으며, 이중수혜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장학금을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1. 근로장학금
2. 장애학생장학금
3. 형제자매장학금
4. 학자금대출이자면제장학금
5. 공로장학금
6.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
7. 봉사장학금
8. 총장의 승인을 득한 특별장학금
9. 인하프로그램장학금
10. 기금장학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근로장학금과 제2항제9호의 인하프로그램장학금, 제2항제10호의 기금장학금은 수업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외장학금은 출연자의 조건에 따라 교내장학금과 이중수혜 및 수업료 초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수혜제한) 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잔여재학기간 동안 장학생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유기정학 30일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2. 장학금 수혜신청에 허위사실이 있는 자
3.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한 학기 동안 장학생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근신 및 유기정학 30일미만의 징계를 받은 자
2. 「수강신청규정」 제5조(교과목의 포기)에 의거 포기과목이 있는 자의 정석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한진장학금 및 신입학 성적우수와 관련한 장학금의 수혜
3. 「학칙」 제24조에 의거 전과하는 자의 성적우수장학금 수혜
4. 근로장학금과 인하프로그램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 수혜자 중, 「학칙」 제8조에 정하는 수업연한을 초과하거나 부분수강을 하는 자
5. 신입학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글로벌장학금, 교직원자녀장학금, 북한 이탈주민장학금, 가계곤란장학금, 인하사랑장학금, 학비보조장학금 수혜자 중 유급 및 중도휴학을 포함하여 정규등록 횟수가 8회(건축학과 10회, 의학과는 의예과를 포함하여 12회)를 초과한 자
6.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

③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 자매대학에 파견된 학생은 1년 범위내에서 제

2항제4호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신입학장학금 등 장학금수혜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기타 장학혜택(월보조금, 생활관비 등)의 경우, 기준이 되는 장학금의 수혜자격이 정지되면 기타 장학혜택도 정지된다.

제13조 (장학금 수혜신청 방법) 가계곤란성장학금(고른기회장학금, 학비보조장학금, 인하사랑장학금, 가계곤란장학금 등) 수혜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타 장학금 수혜 희망자는 해당 장학금의 안내 공지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장학금, 북한이탈주민장학금, 교직원자녀장학금 수혜자는 입학 또는 사유발생시에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장학금 지급방법) ① 등록금 감면 성격의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 감면을 원칙으로 하며 고지서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단,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방지 제도에 따라 대출 상환이 필요한 경우 상환 처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근로장학금 및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은 학생 명의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장학금 신청성적 기준)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수혜대상자를 선발하는 장학금의 학점 및 성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정학점은 「학칙」 제39조에 정하는 매학기 수강해야 할 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장학금 수혜를 위한 직전 정규학기 수강학점과 취득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 교내장학금은 16학점 이상 신청하고 15학점 이상 취득. 단, 정규등록이 8차 학기(건축학전공 10차)인 경우 12학점 이상 신청하고 9학점 이상 취득

나. 성적우수장학금 및 정석장학금, 신입생성적장학금은 16학점 이상 신청하고 16학점 이상 취득. 단, 정규등록이 8차 학기(건축학전공 10차)인 경우 12학점 이상 신청하고 12학점 이상 취득

다. 미래융합대학 소속학과의 경우 12학점 이상 신청하고 12학점 이상 취득

2. 현장실습 및 계절학기, 부분등록으로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정정된 성적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교환학생 및 학기제 현장실습 파견 복귀자의 장학생 선발은 교환학생 및 학기제 현장실습 파견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복귀자에게는 파견 복귀 학기의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학사과정에서 수강한 본 대학원 교과목을 학사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성적은 평점평균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장학생의 교체) 선발된 장학생이 제10조 내지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격학생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16조의2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장학 업무 관련 개인정보파일은 준영구 보관한다.

제4장 위원회

제17조 (설치와 구성) ① 본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외부총장, 기획처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 국제처장, 입학처장과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외부총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학복지팀장으로 한다. 단, 신입학 장학생 선발 계획에 관한 사항은 입학 관련부서 팀(실)장을 간사로 두어 위원회를 진행한다.

제18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예산 및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지급액과 지급인원에 관한 사항
3. 장학금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및 총장이 의뢰한 사항

제20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학기 시작 2개월 전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국가장학금위원회) ① 제8조제3항의 국가장학금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장학금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장학금 유형Ⅱ의 소득구간별 지급액은 배정예산과 수혜인원을 고려하여 국가장학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국가장학금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장학위원회에서 겸한다.

제22조 (장학금사정관제) ① 맞춤형 장학정보 제공과 상담 및 면학지원을 위해 장학금사정관제를 운영한다.

② 장학금사정관은 학생지원처 장학복지팀 직원으로 구성한다.

부 칙(1973. 3. 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 3.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9.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9.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 1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9.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2.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1.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1.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9.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2.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0. 20.)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1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2. 26.)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다만, 농·어촌자녀 특별전형 장학금의 1999학년도 이전 입학
생의 수혜기준은 평점평균 4.00이상을 3.50이상으로 평점평균 3.50이상을
3.00 이상으로 적용한다.

부 칙(2000. 3.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인하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이 2001년 7
월 1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에 준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2002. 5. 10.)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9.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1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9.)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 17.)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7.)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회배려자 특별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학업 성적이 2.00 이상인 경우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

부 칙(2009. 4. 23.)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내부결재에 의거 직제개편에 따른 부총장 명칭변경)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30.)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 제6조제12호(학자금대출이자면제장학금)는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9.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인하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준하여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8.)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30.)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28.)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5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3호, 제8조제3항, 제10조, 제11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2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9. 19.)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제2호, 제13조)은 201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18.)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2조제2항제3호)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8.)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인하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준하여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0.)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조, 제15조제4호)은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4.)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제1호, 제6조제1호, 제14호 및 제15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호)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25.)

제1조 (명칭변경) 정관 개정(2013.7.25)에 의거 「학교법인 인하학원」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으로 변경됨. 이에 따라 관련 규정류의 「학교법인 인하학원」을 2013년 7월 25일자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으로 변경함.

부 칙(2014. 9. 24.)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제2호 및 제3호 삭제, 제6조 개정)은 201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1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조, 제12조제1항제5호, 제15조제4호 개정, 제16조의2 신설)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7.)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제6호, 제6조제12호 및 제18호,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 개정, 제4조제8호, 제6조제20호 및 제21호 신설)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4조제6호의 농·어촌자녀 특별전형 장학금과 제4조제7호의 기회균형선발장학금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폐지한다.

부 칙(2015. 11. 27.)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내부결재에 의거하여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3.)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변경전 제6조제16호 삭제에 따른 제16호 내지 제20호로의 번호 수정, 제11조제2항제8호 삭제에 따른 제11조제2항제8호 내지 제9호로의 번호 수정, 제11조제3항)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8.)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11호 개정)은 201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6조1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를 비롯한 직계가족 모두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일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부 칙(2017. 1. 27.)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5조 4호 개정)은 2017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5조4호 현장실습 참가자의 장학금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지급한다.

부 칙(2017. 2.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 17호,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개정)은 「인하대학교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준하여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 제19호)은 「인하대학교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준하여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7.)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제21호 신설, 제11조제2항제10호 신설, 제11조제3항 개정, 제12조제2항제4호 개정)은 201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30.)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제5호, 제5조제1호 및 제2호, 제6조제5호 및 제17조, 제21호,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17조제4항)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장학복지팀 신설)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7.)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제17조 제2항 및 4항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9. 9.)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1.)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교학부총장→대외부총장 위원장 변경)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13.)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20.)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8.)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번호	개정일자	번호	개정일자
1	1974. 03. 01	16	1995. 12. 01	31	2007. 09. 19
2	1979. 09. 01	17	1998. 12. 28	32	2008. 09. 17
3	1981. 09. 01	18	2000. 01. 01	33	2008. 12. 17
4	1982. 01. 15	19	2000. 03. 01	34	2009. 04. 23
5	1982. 09. 01	20	2001. 03. 01	35	2009. 07. 30
6	1983. 02. 01	21	2001. 06. 01	36	2009. 09. 01
7	1984. 02. 01	22	2001. 07. 01	37	2011. 06. 08
8	1985. 01. 01	23	2002. 05. 10	38	2011. 11. 30
9	1986. 01. 01	24	2002. 07. 01	39	2012. 03. 28
10	1986. 09. 01	25	2004. 01. 01	40	2012. 09. 19
11	1988. 01. 01	26	2004. 09. 01	41	2012. 12. 18
12	1988. 12. 01	27	2004. 11. 01	42	2013. 02. 28
13	1991. 10. 20	28	2005. 03. 01	43	2013. 03. 20
14	1992. 12. 15	29	2005. 09. 15	44	2013. 09. 04
15	1993. 12. 26	30	2006. 09. 01	45	2013. 07. 25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번호	개정일자	번호	개정일자
46	2014. 09. 24	61	2022. 11. 01	76	
47	2015. 04. 15	62	2022. 12. 13	77	
48	2015. 10. 07	63	2023. 02. 20	78	
49	2015. 11. 27	64	2023. 12. 08	79	
50	2016. 03. 23	65		80	
51	2016. 11. 08	66		81	
52	2017. 01. 27	67		82	
53	2017. 02. 01	68		83	
54	2018. 11. 01	69		84	
55	2018. 11. 07	70		85	
56	2020. 06. 30	71		86	
57	2020. 09. 01	72		87	
58	2020. 12. 17	73		88	
59	2021. 09. 09	74		89	
60	2022. 09. 05	75		90	